

자연과학대 학생회 회칙

1장 총칙

1조 (명칭)

본회는 중앙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생회라고 한다.(이하 본회)

2조 (목적)

본회는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학생 자치활동을 통하여 비판적이고 생명력 있는 대학문화를 창조하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민주적 사회건설을 위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며 안으로는 중앙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생으로서 권익과 학교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지역사회 및 같은 목적을 공유할 수 있는 주체들과 연대하여 대학생으로서 지향해야 할 가치와 방향성을 찾고 나아감을 그 목적으로 한다.

3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자연과학대학 학부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생은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4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2.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본회의 활동과 관련한 결정에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
3. 본회 회원은 각 선거직 임원이 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탄핵할 수 있다.
4. 본회 회원은 본회 회원에 부당한 침해가 있을 때 이에 대응할 권리를 갖는다.

5조 (회원의 의무)

1. 본회 회원은 대학 자치와 본회의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수호해 나갈 의무가 있다.
2. 본회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6조 (구성)

본회는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총회, 단대학생대표자회의, 단대운영위원회, 집행국, 자연대 동아리, 동아리 연합회 그리고 7조에 의거한 특별기구로 구성한다.

7조 (특별기구)

1. 본회는 활동 상 필요한 경우에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2. 특별기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연대 학생회장이 구성한다.

2장 학생총회

8조 (지위)

학생총회는 본회의 활동에 관한 최고 의결권을 갖는다.

9조 (구성)

학생 총회는 본회 회원 전체로 구성한다.

10조 (권한)

1. 학생총회는 본회의 운영 전반에 중요한 상황을 보고 받는다.
2. 학생총회는 회원 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3. 학생총회는 자연대 학생회장의 탄핵 결정권을 가진다.

11조 (의장)

학생총회 의장은 자연대 학생회장이 맡는다.

12조 (소집)

1. 학생총회는 운영위원회 및 단대학생대표자회의의 요구가 있거나 회원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자연대 학생회장이 3일 이내에 반드시 소집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자연대 학생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학생총회 소집은 소집이유를 명시하여 3일전에 공고해야 한다.(단, 전항의 단서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3조 (의결)

1. 학생총회는 본회 회원의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자연대 학생회장의 불신임 결정에 관한 학생총회는 단대학생대표자회의나 운영위원회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진행 아래, 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총회를 할 수 없을 시에는 총투표로 대신할 수 있다.

3장 단대학생대표자회의

14조 (지위)

단대학생대표자회의(이하 단학대회)는 학생총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최고 결정권을 위임받아 활동한다.

15조 (구성)

1. 자연대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2. 과 학생회장, 과 부학생회장
3. 각 과대표, 동아리 회장, 동아리 연합회장
4. 과 학생회장, 과 부학생회장 궐위 시에는 재적 대표자에서 제하고 발언권만을 가지는 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
5. 대표자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 그 단위 회원에게 위임장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16조 (의장)

의장은 자연대 학생회장이 맡으며, 대외적으로 단학대회를 대표한다.

17조 (소집)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1. 정기회의는 매 학기 초 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회의는 재적 대표자 1/4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회의 발의 시 의장이 소집하며 긴급을 요할 시에는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3. 의장은 대회 7일 이전에 대회를 공고하여야 한다.

18조 (업무)

1. 본회 활동의 총 노선 및 주요 사업 승인
2. 본회 예결산의 심의 및 의결
3. 회원에게 재정 부담을 지우는 사항
4. 본회의 회계 및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5. 본회 자연대 학생회장의 탄핵 발의
6. 집행부서의 신설, 폐지 및 집행간부의 소환 및 탄핵 결정
7. 학칙 개정의 건의
8. 기타 단학대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19조 (권한)

1. 회의 진행에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와 집행부에 서류 및 자료 제출 요구
2. 학생총회 소집 요구

20조 (안건 상정)

1. 자연대 학생회장 또는 운영위원회는 3일전까지 안건을 상정한다.
2. 재적 대표자 1/5 이상의 연서로 개회 전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3. 회원 150인 이상의 연서로 개회 전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21조 (의결)

1. 재적 대표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에 의해 의결된다.

2. 토론 및 의결에 관해서는 대회 시행 세칙을 둔다.

4장 자연대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22조 (업무 및 권한)

1. 집행국의 각 국장을 추천하여 단학대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임명 및 해임을 할 수 있다.
2. 학생총회, 단학대회, 운영위원회, 집행국 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주관한다.
3. 본회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 자치활동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 당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본회의 회칙 개정을 발의 할 수 있다.
5. 운영위원회에서 편성된 사업 계획과 예산, 결산안을 단학대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단학 대회에서 승인된 예산, 결산은 7일 내에 본회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6. 단학대회에 제출되어 승인된 사업 이외에 사후에 필요하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된 사업을 계획, 추진할 수 있다.
7. 학내에 중대한 문제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특별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8. 단학대회, 자연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자연대 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집행한다.
9. 자연대 학생회장은 대외에 관하여 대표권을 갖는다.
10. 자연대 학생회장은 기타 자연대 학생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1. 부학생회장은 자연대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자연대 학생회장 유고 및 궐위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12. 부학생회장은 자연대 학생회장이 위임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23조 (임기)

자연대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임기는 매년 당선 연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보충선거시에는 당선 직후부터 그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24조 (선출)

1. 자연대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본회 회원이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2. 자연대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대행을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3. 자연대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유고 및 사퇴 시 잔여 임기가 100일 이상일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25조 (신분 보장)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자연대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직위에서 해임되지 않는다.

5장 운영위원회

26조 (위치)

운영위원회는 본회 최고 운영 기구이다.

27조 (구성)

1. 운영위원회는 자연대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각 과 학생회장단, 동아리 연합회장으로 구성된다.(단, 단위당 의결권은 한 표로 한다.)
2.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자연대 학생회장이 맡는다.(부재 시 자연대 부학생회장)

28조 (업무 및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학생회비의 심의 조정
2. 본회 제반 사업 계획안의 심의 조정
3. 본회 예산안 심의 조정
4. 본회 결산안 심의
5. 집행국 업무 집행의 조정
6. 본회의 회칙 개정안 발의
7. 단학대회 소집 요구와 본회의 회원에 대한 중대한 문제의 심의
8. 단학대회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 의결
9. 예산자치제 자치조직 선정의 심의, 의결

29조 (소집)

1. 정기회의는 매주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만장일치 하에 그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회의 시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 임시회의는 자연대 학생회장이 요구 또는 운영위원 1/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30조 (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과 학생회장 2인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6장 집행국

31조 (위치)

집행국은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32조 (구성)

집행국은 자연대 학생회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하며 각 집행국장, 부장, 국원으로 구성한다. 또한 어떠한 인준 및 임명 절차를 거치지 않는 수습국원을 둘 수 있다.

33조 (업무 및 권한)

1. 사업 및 예산의 집행
2. 본회의 사업계획안 예산안 편성, 결산서 작성
3. 기타 집행국의 업무

34조 (역할)

집행국에는 제반 활동을 위해 여러 가지 부서를 두고 그에 맞는 기능을 관장한다.

7장 과 학생회

35조 (구성)

1. 과 학생회는 해당 과의 전체 학생으로 구성한다.
2. 과 학생회는 해당 과 학생활동을 위하여 별도의 규정과 조직을 갖는다.

36조 (과 학생회장)

1. 과 학생회장은 해당 과를 대표하여 본회의 운영위원이 된다.
2. 과 학생회장은 해당 과 학생이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37조 (과대표)

과대표는 해당 과 학년에서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8장 자연대 동아리

38조 (지위)

본회의 동아리로서 특별자치기구이다.

39조 (구성)

본회의 등록된 모든 동아리로 구성된다.

40조 (업무, 권한 및 의무)

1. 동아리 활동을 함에 있어서 본회의 명예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권을 가진다.
2. 동아리 활동을 함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의 사업보고(동아리)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개별 동아리는 보고에 응해야 한다.

41조 (등록요건)

1. 등록 요건

- ① 등록을 원하는 동아리는 등록 신청서, 동아리 회칙, 동아리 등록 목적, 동아리 소개서를 각 1부씩을 본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 ② 등록 결정은 운영위원회와 집행국에서 심의 후, 단학대회에서 재적인원 1/2이상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③ 3개학과 이상 20인 이상을 회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단, 하나의 학과가 회원의 1/2을 차지하지 않아야 한다.)
- ④ 20인 이상 서명한 회원명부

2. 가 등록 동아리

- ① 무분별한 동아리 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가 등록 심사 후 1년 동안 동아리 등록을 유예시킨다. (단, 가 등록 동아리 1년 경과 후 단학대회 전까지 동아리 여건이 안 될시, 집행국의 심의 후 운영위원회의 판단 하에 결정된다.)
- ② 가 등록 동아리 등록결정은 41조 1항에 맞게 서류를 제출하고 집행국의 심의 후, 운영위원회의 과반참석 및 과반의 동의를 거쳐 가 동아리 등록을 한다.
- ③ 가 등록 동아리의 권한
모든 활동적인 면에서 정규동아리와 유사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단, 단학대회의 결권 및 예산자치제에서는 제외된다.)

3. 최종 동아리 등록결정은 가 등록 동아리 상태의 1년경과 시, 운영위원회와 집행국에서 심의 후, 단학대회에서 재적인원 1/2 이상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 최종 등록을 승인한다. (단, 등록서류는 41조 1항의 서류 및 1년 사업내역을 단학대회 3일 이전에 제출한다.)

42조 (재심의)

1. 단대학생대표자회의가 성사되었을 시, 운영위원회에서 동아리 재심의를 관해 발제할 수 있고, 과반수 찬성이 있을 시 안건에 상정할 수 있다.
2. 동아리 재심에서 동아리 유지의 요건은 등록요건과 같다.
3. 동아리 재심에서 동아리 유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동아리의 자격이 정지된다.
4. 동아리의 자격이 정지된 단체는 다음 해 동아리 재등록 요청을 할 수 있다.

9장 동아리 연합회

43조 (지위)

동아리 연합회는 본회 동아리 회원들의 대표 기구이다.

44조 (구성)

1. 동아리 연합회는 동아리 연합회에 등록된 모든 동아리 회원으로 구성한다.

2. 동아리 연합회는 자연대 동아리 3개 이상으로 구성한다.

45조 (회장)

1. 동아리 연합회장은 전체 동아리 회원의 과반수가 직접 선거로 선출하며, 기타 세부 사항은 동아리 연합회칙에 따른다.
2. 동아리 연합회장은 동아리 연합회를 대표하여 운영위원이 된다.

46조 (동아리 연합 회칙)

동아리 연합회는 개별 동아리와 전체 동아리의 이익과 자유로운 활동을 위하여 본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동아리 연합회칙과 조직을 가질 수 있다.

10장 팀플룸 관리위원회

47조 (구성)

자연대 집행국원으로 구성한다. (단, 자연대 집행국이 부재 시에는 자연대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 1인이 관리한다.)

48조 (이용수칙)

1. 모든 회원은 팀플룸 관리위원회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 후 팀플룸을 이용할 수 있다.
2. 관리위원은 신청서를 받아 확인한 후, 타 회원이 해당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고한다.
3. 팀플룸을 이용한 회원은 신청한 시간이 완료된 후 팀플룸 정리정돈을 의무로 한다.
4. 관리위원은 상의 회칙을 기반으로 2조의 목적이 어긋나지 않은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이용수칙을 정한 후 공포할 수 있다.
(단, 새로이 공포된 수칙의 기한은 당해 선거직 임기로 한정한다.)

49조 (제제)

1. 56조 (이용수칙)을 지키지 않을 시 팀플룸 이용자에 한해서 경고를 부여하며, 3회 이상 경고누적 시 한 달간 팀플룸 사용을 금지한다.

11장 재정

50조(재정)

1. 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 및 기타 수익,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51조(기타수익)

1. 본회의 자치활동에서 얻어지는 수입금을 기타 수익이라 한다.
2. 기타 수익은 수익 발생이 완전히 종료된 시점에 회계 장부에 기록한다.

3. 기타 수익의 수익 발생 시점부터 회계장부에 기록되는 시점까지 발생한 세부적인 수익과 지출은 결산공고 시에 공고해야한다.

52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학생회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53조 (회비)

1. 본회의 회비는 집행국에서 정하여 본회의 운영위원회와 중앙운영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확정 된다.
2. 본회의 회비는 매학기 등록 시 납부된다.
3. 본회의 회비사용에 관한 회계업무는 본회에서 담당하고 그 인출 및 집행은 자연대 학생회장의 결재에 의하여 행하며, 이를 담당하는 부서(사무,회계)를 둘 수 있으며 인출 및 집행은 이를 담당하는 국장(사무,회계)이 담당한다.

54조 (예산 편성, 심의 확정)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각 기구별, 시기별 사업 계획별로 편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거쳐 정기 단학대회 때 의결한다.

55조 (재정 결산)

학생회 임기 말 마지막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학생회비 총 결산을 감사한다.

12장 예산 자치제

56조 (지원예산)

1. 지원예산은 매학기 자연대 학생회비의 1/10로 한정한다.
2. 전학기의 남은 금액은 다음 학기로 이월된다.

57조 (지원자격)

1. 본회 회원으로 구성되어 그 활동 기반이 자연대학생회인 자치조직.
2. 자연대 이상의 단위를 대상으로 사업을 계획한 과 소모임 또는 그 구성원이 3개과 이상이며 구성원 절반이 한 개과에 편중되지 않는 20인 이상의 자치조직
3. 학교 및 학생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학생조직
4. 그 목적이 본회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사업

58조 (심사)

집행국에서 심의 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을 한다.

13장 선거

59조 (피선거자격) 자연대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1. 정학생회장은 본 회원으로 4차 학기 이상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부학생회장은 본 회원으로 2차 학기 이상 등록한 자이어야 한다.
2. 회원 1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단 4개 과 30인 이상 씩)

60조 (선거시기)

1. 자연대 학생회장은 임기연도 전년 11월 중에 실시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선거를 연기 할 수 있다.
2.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 선거직 임원은 각각 그 회칙에 의한다.

61조 (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둔다.
2. 선관위는 집행국 중 1명과 운영위원회 전원으로 구성하며, 자연대 학생회장이 선관위 위원장이 된다.
3. 선거에 관한 이의제기는 선거일 후 1주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4. 선관위는 자연대 학생회장 선거일을 늦어도 1주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62조 (임기)

모든 선거직 임원의 임기는 매년 당선 연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3월에 선거할 경우 당선 직후부터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선거직 임원에서 학년과대표의 경우는 제외한다.

63조 (선거시행세칙)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본회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14장 회칙개정

64조 (발의)

1. 대표자 회의 재적 대표자 1/5이상의 발의.
2. 운영위원회의 발의
3. 회원 총수의 1/100이상에 해당하는 회원의 발의

65조 (의결)

회칙 개정이 발의 시 단학대회 의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14일 이내에 단학대회를 열고 재적 대표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표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6조 (공포)

단학대회 의장은 의결 후 3일 이내에 공포한다.

15장 비상대책위원회

67조 (정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앙대학교 자연과학대 학생회장 선거 시행세칙에 마련된 선거기간에 선거가 무산되어 자연대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미선출 되거나 자연대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사퇴 또는 탄핵되는 등의 이유로 공석이 되었을 때, 운영위원회에 준하여 구성되는 위원회를 의미한다.

68조 (구성)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원은 자연과학대 학생회 회칙 27조(운영위원회 구성)에 준하여 같이 구성되나 자연대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구성원에서 제외한다.

69조 (업무 및 권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자연과학대 학생회 회칙 28조(운영위원회 업무 및 권한)에 언급된 운영위원회와 같은 업무와 권한을 갖는다.

70조 (소집과 의결)

비상대책위원회는 자연과학대 학생회 회칙 29조, 30조(운영위원회의 소집과 의결)와 같은 소집과 의결 절차를 거친다.

16장 비상대책위원장

71조 (업무 및 권한)

자연과학대 학생회 회칙 22조 (자연대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업무 및 권한)에 준하는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단, 업무와 권한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없고,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그 업무와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다.

72조 (선출)

1.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후 비상대책위원들 중 한명으로 구성된다.
2.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 투표로 인해 재적인원 과반 찬성으로 선출한다.

부칙

1조 (발표)

본 회칙의 효력은 공포와 함께 발생한다.

2조 (기타 사항)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제 민주단체의 회칙 및 관례를 따른다.

3조 (비상 상황)

학생총회 및 단학대회가 3년 이상 개의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대행해 운영위원회에서 총회 성격의 인준을 진행할 수 있다.

이 회칙은 2020년 2학기 9월 29일 단학대회를 거쳐 수정되었음.